

2021. 12. 30.

태평양: 21-12-1476-1

수 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참 조: 조진현 상무님, 김하제 대리님 / 농가지원부

제 목: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관련 검토

위 제목 기재의 질의에 관하여 검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I.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사육시설 면적이 50m²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로서,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18조의2 제1항).

귀 협회에 의하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귀 협회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해석상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II. 본 법무법인의 의견의 요지

- (i)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문언상 행정청에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용중지처분 또는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재량이 있으나, (ii)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상 일반적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취지, 현행 법체계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규정의 현황, 가축분뇨법의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 행정청은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고, (iii) 이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을 확대하는 최근 정부 정책 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됨.

나아가 (iv) 행정청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처분 대신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하여 행정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중지처분을 하거나, 공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려쳐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중지처분을 하거나,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재량권의 불행사) 사용중지처분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생각됨.

특히, 돼지 사육 등 축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사용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로서는 그 동안 키운 가축들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거나 살처분할 수밖에 없고, 사용중지 기간이 도과한 이

후 사업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면 돼지의 경우 자돈의 준비 등에 수년간 아무런 수입 없이 비용만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폐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간의 사용중지 처분도 사실상 허가취소 처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폐업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가축 관계법률이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축처분의 곤란을 과징금 대체의 사유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청으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 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해석상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III. 본 법무법인의 의견에 대한 설명

1.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문언해석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법 제18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¹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¹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18조의2 제1항).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그러므로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문언상 행정청에는 사용정지 처분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그 재량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그 과정에서 각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한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청이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구

-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체적 타당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체계적·논리적 해석

가. 일반적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취지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82, 183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²

우리 법률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981. 12. 31. 개정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영업을 정지되는 경우 그 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을 못하게 되어 받는 불이익보다는 교통이 마비되어 그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시민이 겪게 되는 불편이 더 클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83, 184면).

나. 현행 법체계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규정의 현황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별표와 같습니다.

²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9판(2020), 644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정하고 있는 법률 중 대부분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법률만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례를 살펴 보면, 특별히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대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가축분뇨법의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입법취지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입법 당시 검토보고서, 본회의 회의록 등에는 과징금 대체사유로 ‘가축처분 곤란’이 명시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축산법에도 동일하게 과징금 대체사유가 ‘가축처분 곤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³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있어서 축산법에 거의 동일한 조항이 신설된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입법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축산법 25조의2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근거규정의 신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25조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규율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특성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축 사육을 즉시 중지할 수 없고, 계란·우유 등은 매일 생산되므로 현실적으로는 가축을 처분할 때까지 영업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

³ 축산법 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금전적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으로 가능한 입법조치라 보임.

또한, 축산 관련 영업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를 두고 있음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축산법 25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사용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현실적으로 가축 사육을 즉시 중지할 수 없는 축산업의 특성 상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입법 목적을 금전적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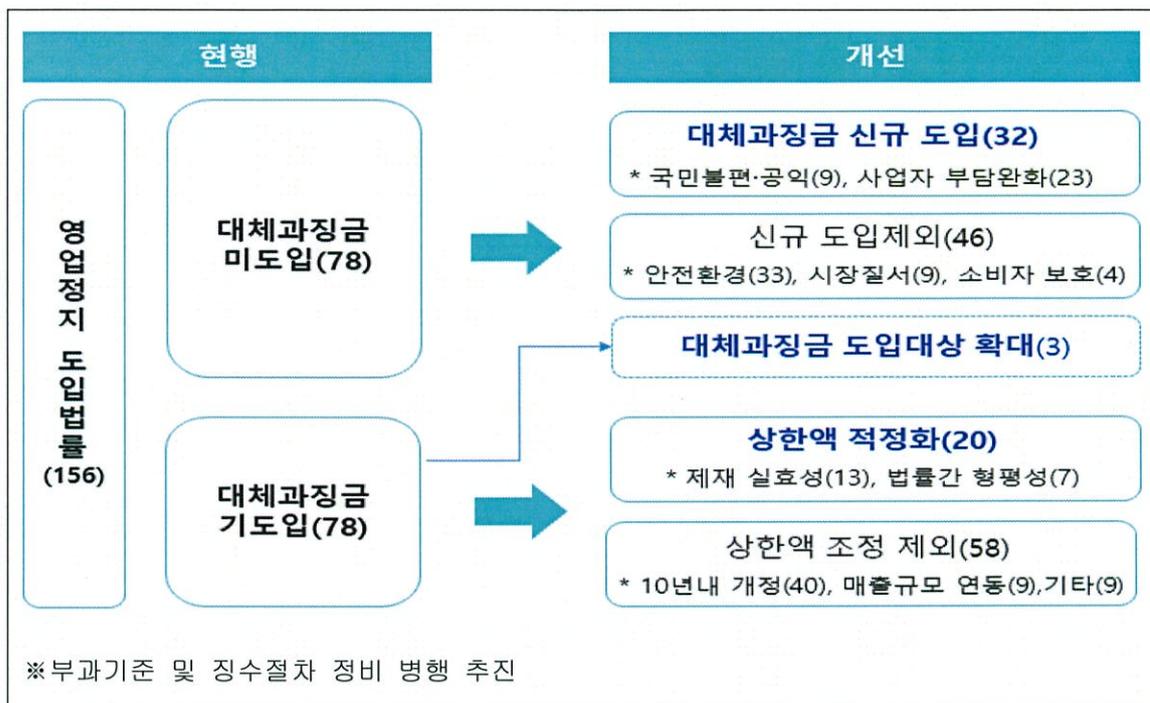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18조의2가 형식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사용중지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축산업 특성상 가축 사육을 즉시 중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을 확대하는 최근 정부 정책동향

국무조정실은 2020. 7. 28.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① 영업정지를 규정한 총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은 78개 법률 중에서 32개 법률에 신규 도입하고, 기존 도입한 법률(78개) 중 3개 법률에는 추가 도입하여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하고, ②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중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③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⁴



즉, 정부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다수인 업종 등에서 사업자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목재생산업자, 옥외광고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골재채취업자 등을 예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양돈업의 경우 한우, 육우, 젓소, 닭, 오리 등 타 축산업종에 비해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많고, 1980년대에 비해 평균 축산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⁵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종입니다.

⁴ 국무조정실 2020. 7. 28.자 보도자료(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 등 사업자 부담경감 추진)

⁵ 통계청, 2020. 12. 4.자 보도자료(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

따라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을 확대하는 최근 정부 정책동향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청이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영세사업자가 다수인 업종에서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확대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되도록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재량권에 내재된 한계

가.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고, 재량권이 이 법적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습니다.⁶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해석상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명시적 판례는 발견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용중지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

⁶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9판(2020), 338, 339면.

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중략)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또한, 대법원은 행정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행정청이 원고의 의약품 개봉판매 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재량준칙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명백하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따라서 행정청으로서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급행정기관이 발한 재량준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스스로 정한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⁷

귀 협회에 의하면, 최근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사육시설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가축처분의 곤란**, 사용중지처분의 과중함, 양돈농가의 과도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해 왔

⁷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9판(2020), 49~52면.

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가축분뇨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중지나 폐쇄명령보다는 경고, 개선명령, 조치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⁸

요컨대, 행정청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처분 대신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하여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사용중지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비례원칙 위반

비례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법원칙이지만 특히 재량권 행사의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제재처분은 법령에 의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가하는 경우 당해 제재처분의 목적과 제재처분 사이 또는 범위반의 정도와 제재처분 사이에 현저히 비례관계를 잃은 경우에는 당해 제재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⁹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특히,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함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⁸ 환경부, 2019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세부 지도점검 결과.

⁹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9판(2020), 340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 그 사용중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축산업의 특성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축 사육을 즉시 중지할 수 없습니다. 가축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가축분뇨가 매일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축을 처분할 때까지 영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 협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들은 허가 받은 가축분뇨의 배출량을 모두 사용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배출량이 있다 하더라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서 다른 축사에서 사육된 가축들을 함부로 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그 동안 키워왔던 가축들을 모두 출하하려고 하여도, 이를 들일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찾기 어려워 일시에 출하할 방법이 없고, 결국 가축들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새끼가축들(돼지의 경우, 자돈)을 포함한 가축들 전부를 살처분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사용중지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다시 새끼가축을 들여 사육하고 출하하려면 상당한 기간(돼지의 경우, 약 1~2년)이 필요한데, 가축을 출하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단기간의 사용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로서는 그 동안 키운 가축들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거나 살처분할 수밖에 없고, 사용중지 기간이 도과한 이후 모돈을 통한 자돈 확보 등 사업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 아무런 수입 없이 비용만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폐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 관계법률에서는 특별히 과징금 대체의 사유로 가축처분의 곤란을 특별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 처분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사실상 허가취소 처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폐업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 행정청으로서의 위와 같은 중대한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 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사용중지처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가축을 적절히 처분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폐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중지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불행사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재량의 해태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였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관례에 따르면,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제재처분의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¹⁰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 대체와 관련하여서도, 법원은 과징금을 대체할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징금 대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구합250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구

¹⁰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9판(2020), 342~344면.

합83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4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18조의2가 정한 ‘가축분뇨의 곤란’ 사유가 있어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중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론

이처럼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문언상 행정청에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용중지처분 또는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상 일반적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취지, 현행 법체계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규정의 현황, 가축분뇨법의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 행정청은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을 확대하는 최근 정부 정책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행정청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사용중지처분 대신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하여 행정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중지처분을 하거나, 공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쳐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중지처분을 하거나,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재량권의 불행사) 사용중지처분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제18조의2의 해석상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

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른 의문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 본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박 태 준



변호사 최 석 림



변호사 구 도 형



변호사 김 현 정



사본배부: 외국변호사 방종식(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별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현황

연번	법률	조문번호	조문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과징금)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u>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6항·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2(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

			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제8호의3·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방송법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u>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u>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3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u>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u>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	전파법	제7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u>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u>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19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	공항시설법	제5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8	항공안전법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u>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	궤도운송법	제13조(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

			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21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u>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u>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3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4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5	건축물관리법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u>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7	약사법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28	에너지법	제16조의7(과징금 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u>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0	온천법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u>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u>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u>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2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4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이하 생략)</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u>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3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36	관광진흥법	제37조(과징금의 부과)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u></p>

			<u>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u>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37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u>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8	물환경보전법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9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u>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u>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	화장품법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5	건설기술 진흥법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6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8	석탄산업법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u>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9	수의사법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u>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u>

			수 없다.
51	의료기기법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2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u>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u>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3	비료관리법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u>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u> ,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같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6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57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 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같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58	도시철도법	제38조(과징금의 부과)	<p>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59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	<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각호생략)</p>
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과징금)	<p>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u>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u></p> <p>2. <u>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u></p>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1	먹는물관리법	제51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2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p>할 수 있다.</p> <p>1. <u>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u></p> <p>2. <u>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u></p>
6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p>①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p>① <u>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1. <u>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u></p> <p>2. <u>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u></p>

			<p><u>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u>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p>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u>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u></p> <p><u>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u>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65	하수도법	제50조(과징금)	<p>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u>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u> 그 영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2억원 이하</p>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6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문생략)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들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문생략)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문생략)
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단서생략)

68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6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과징금)	①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0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u>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2. <u>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u>

			<p>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7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과징금)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u>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73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p>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취소 등)	<p>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각호생략)</p>
7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7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p>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p>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p>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9	철도사업법	제17조(과징금처분)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8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6(과징금)	<p>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p>

			<p>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p><u>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u></p> <p><u>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u></p> <p><u>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과징금)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82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의2(과징금)	<p>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8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과징금)	<p>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그</u></p>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4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5	사료관리법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6	악취방지법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각호생략)
8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8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8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90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u>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9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9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93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u>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2문생략)
9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9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u>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6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9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문생략)
9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u>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0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8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10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처분)	<p>①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u>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103	소방장비관리법	제17조(과징금)	<p>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p>

			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10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0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24조(지정인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8	어선법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9	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

			는 제조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1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u>개인 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사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2	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u> 그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2문생략)
11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제25조(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법		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서 <u>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u>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u>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u>

			<u>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18	저작권법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생략)
119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20	전기안전관리법	제44조(관리·감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u>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2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같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같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같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u>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같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문생략)
126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우선구매	제10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u>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u>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u>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12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업무정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3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3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32	축산법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u>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33	항공사업법	제29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u>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3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35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1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u>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u>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